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이창열 의원
- 제안일자 : 2025. 4. 28.
- 회부일자 : 2025. 4. 28.
- 상정일자 : 2024. 5. 7.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반환 사유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여 역량강화 내용 구체화(안 제3조제3호)
-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지원중단 사유 추가(안 제6조제4호)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1)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지역 봉사활동을 독려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을 거부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통해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지원범위)에서 군수의 지원사항에 ‘선진지견학’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안 제6조(지원중단)에서 군수의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5. 종합검토의견

- 평창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자긍심 고취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수권 범위 내에서 위배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평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안전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330-2265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평창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비용
3. 교육, 훈련 등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